

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

2018. 2. 8

관계부처 합동

목 차

I .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	1
II. 사회적금융의 개념·현황 및 평가	3
III. 사회적금융 해외사례	7
IV.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	10
1. 기본 방향	10
2.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	12
3. 사회적금융 공급확대	15
4.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	22
V. 추진 일정	25

I. 사회적경제의 개념 및 지원체계

- 사회적경제는 구성원간 협력·자조를 바탕으로 재화·용역의 생산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경제적 활동을 의미
- 경제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경제와 유사하나, 연대와 협력, 민주적 운영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점에서 차이
- 일자리 부족, 양극화 확대, 복지수요 증대 등 정부가 모두 감당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민간 스스로 해결
-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주요한 법·제도적 체계 등을 갖추는 도입기를 지나 고용·매출 등 양적으로 성장하는 단계에 진입
 - 개별 부처별로 취약계층 고용확대, 자활지원 등 목적으로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을 정의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중
 - 정부·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책자금·보증을 제공하고 법인세 등 세제 혜택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혜택을 부여

<우리나라의 주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·현황>

구 분 (시 행)	사회적기업 (2007년)	협동조합* (2012년)	자활기업 (2012년)	마을기업 (2010년)
소관부처	고용노동부	기획재정부	보건복지부	행정안전부
목 적	취약계층 고용 창출, 서비스 제공	조합원 권리 향상, 지역 사회 공헌	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	지역환경 개선, 지역공동체 활성화
근거법률	사회적기업육성법	협동조합기본법	기초생활보장법	행안부 지침
개수('16末)	1,713개	10,640개	1,149개	1,446개

* 농협·수협·신협·생협 등 특별법에 의한 8개 개별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기업 범주에 포함

- 사회적경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.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」(☞참고)을 마련·발표
 -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'금융 접근성 확대'를 목적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금번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을 마련

참고 사회적경제 활성화 목표 및 발전전략

- ◇ 사회적경제가 포용성장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패러다임 전환 및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Two-Track 발전전략 마련
 - ① (인프라 구축) 사회적경제 성장단계별 특성에 맞는 시스템 구축
 - ② (진출분야 확대) 사회적경제 파급효과가 큰 분야 집중 육성

사회적 가치 실현을 통한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 견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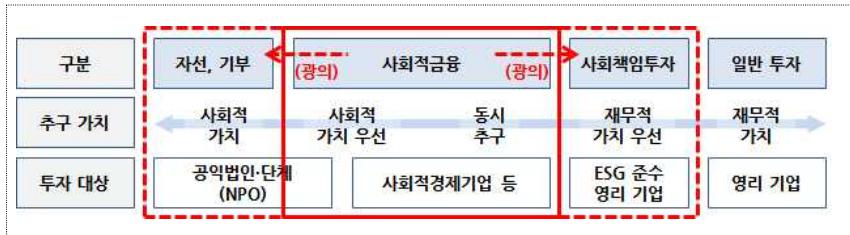


II. 사회적금융의 개념 · 현황 및 평가

1 사회적금융 개념

- 사회적금융(Social Finance)은 사회적 가치(Social Value) 실현을 재무적 이익(Financial Return)과 함께 추구하는 금융
- 협의로는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^{*}에 투자·융자·보증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을 의미
 - * 사회적경제기업(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자활기업, 마을기업 등) 및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사회적경제활동(공공성이 큰 재화·서비스의 생산·판매활동)
 - 임팩트투자(Impact Investing)는 상업성에 기반을 두고 투자 방식으로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교적 발전된 형태를 의미
- 광의로는 추후 회수를 전제로 하는 투자·융자·보증뿐 아니라 보조금(Grant)과 자선행위(Philanthropy)도 포함하거나
 - 사회적 가치를 넓게 적용하여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사회책임투자(SRI)까지 포함
- 금번 방안은 사회문제의 효율적·효과적 해결을 위해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투자·융자·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에 중점

<사회적금융 개념>



2 사회적금융 현황 (공급측면)

- 우리나라의 현재 사회적금융은 정부·공공재원을 중심으로 기존 중소기업·서민 정책금융 지원체계 내에서 수행중([☞]참고)

- 미소금융^{*}과 중소기업정책자금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에 대출 ("16년중 각각 9.5억원, 106억원)
 - * 미소금융은 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출 실행
-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사업을 실시중이며, 서울시의 경우 별도 기금("사회투자기금")을 조성하여 저리융자 ('16년중 207억원)
- 신보와 지역신보에서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에 대해 일반기업에 비해 보증비율을 높인 특례보증 제공 ("16년중 각각 46억원·94억원)
- 투자방식으로는 모태펀드 내 사회적기업 펀드를 별도조성하여 민간자금과 매칭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투자 ('16년중 15.5억원)

- 민간재원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회적금융은 다양한 시도가 있지만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음

- 특정 대기업은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기업 및 전문 인력 육성^{*}과 함께 사회적금융 관련 사업을 실시
 - * '13년 KAIST 사회적기업가 MBA 과정 신설 등
- 일부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공공자금外 민간부문에서 재원을 조달하여 상업적 원리에 기반한 임팩트투자를 수행
 - * 자금지원뿐 아니라 재무·회계, 경영, 마케팅 등에 대한 컨설팅을 병행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가능성을 제고
- 사회적경제단체가 공제형태의 자조기금을 조성하여 회원사인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존재

참고 사회적금융 관련 공공부문 사업현황

구분	사업명	내용	사업구조
대부	서민금융 진흥원 ('08년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적기업에 임대차보증금, 시설·운영자금 등을 대출 (대상)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 (한도) 1억 / (금리) 2~4.5%(사업수행기관별 상이) (상환) 원리금 분할상환(사업수행기관별 상이) (규모) '16년 9.5억 원 (08~16년간 204억 원) 	<pre> graph TD A[서민금융진흥원 후면예금] --> B[민관 사업수행기관] A --> C[민관 사업수행기관] A --> D[민관 사업수행기관] B --> E[민관 사업수행기관] C --> F[민관 사업수행기관] D --> G[민관 사업수행기관] E --> H[사회적기업] F --> I[사회적기업] G --> J[사회적기업] H --> K[기획부 (재정자금)] K --> L[기금기관] L --> M[사회적기업(중소기업보증총액)] </pre>
	중소기업 정책자금 ('10년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기업(사회적기업 포함)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 / (대상)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(한도) 45억 원(수도권 이외 기업은 50억원) (금리) 정책자금기준금리에 연동(약 3%대) (절차) 중진공 접수 및 대상 결정 → 중진공(직접) 또는 금융기관(대리) 신용·담보부 대출 (규모) '16년 106억 원 (10~16년간 304억 원) 	<pre> graph TD A[서민금융진흥원 후면예금] --> B[민관 사업수행기관] A --> C[민관 사업수행기관] A --> D[민관 사업수행기관] B --> E[민관 사업수행기관] C --> F[민관 사업수행기관] D --> G[민관 사업수행기관] E --> H[기획부 (재정자금)] H --> I[기금기관] I --> J[기금기관] J --> K[사회적기업(중소기업보증총액)] </pre>
	서울시 사회투자 기금 ('12년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융자 프로그램 운영 (대상)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등 (한도) 2억 / (금리) 2% / (기간) 최대 5년 (사후관리) 반기마다 재무·사회지표 모니터링 (규모) '16년 207억 원 (총기금 규모 703억 원) <p>※ 기금 재원으로 사회적기업 융자 외 소셜하우징 융자, 중간지원 기관 협력사업 융자, 사회적 프로젝트 융자 프로그램도 운영</p>	<pre> graph TD A[서울시 사회투자기금] --> B[기금운용 위탁] B --> C[한국사회투자(기금운용 수탁)] C --> D[기금기관] D --> E[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] D --> F[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] D --> G[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] </pre>
신용보증	정책성 특례보증 ('12년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에 대한 신용보증 공급 (대상) (예비)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(한도) 1억 원 이내 / (상환) 5년 이상 (보증비율) 100% / (보증요율) 연 0.5% (규모) '16년 46억 원 (12~16년간 211억 원) 	<pre> graph TD A[기금기관 (국민·우리·신한·기업은행 등)] --> B[신용보증 기금] B --> C[보증] C --> D[대출] D --> E[사회적기업·협동조합] </pre>
	사회적 기업 전용 특례보증 ('12년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특별보증 운용 (대상/한도) 사회적기업(4억원), 협동조합(5천만원) (보증비율) 영리 기업·조합 90%, 비영리 기업·조합 100% / (보증요율) 연 0.5% 이내 (상환) 5년 이내(1년 거치, 4년 분할 상환) (규모) '16년 94억 원 (12~16년간 309억 원) 	<pre> graph TD A[신용보증재단 증권회] --> B[제보증] B --> C[지역신용보증재단] C --> D[보증] D --> E[대출] E --> F[사회적기업] </pre>
투자	사회적기업 모태펀드 ('11년~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민간자본시장을 활용하여 사회적기업에 투자 (규모) 제1호 조합(42억원, '11년~, 투자종료), 제2호 조합(40억원, '12년~, 투자종료), 제3호 조합(60억원, '13년~, 투자종료), 제4호 조합(40억원, '15년~) (대상) 사회적기업, 예비사회적기업, 청년 등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가자 등 (규모) '16년 15.5억 원 	<pre> graph TD A[고용노동부 (일반화재)] --> B[모태펀드] B --> C[모태펀드] C --> D[기금운용 민관 재단등] D --> E[기금운용 민관 재단등] E --> F[사회적기업 투자조합 (구조드)] F --> G[기금운용 민관 재단등] G --> H[사회적기업] G --> I[사회적기업] G --> J[사회적기업] </pre>

3 현행 사회적금융에 대한 평가

□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①태동단계로서 ②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③관련 생태계도 미형성된 상황

① 사회적금융시장이 구축된 英·美에 비해 우리나라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태동단계("조화되지 않은 혁신" 참고)에 해당

② 성장기에 들어선 사회적경제의 발전정도*(자금수요)에 비해 금융 공급이 부족한 사회적금융의 과소공급 상태가 지속**

* 사회적기업 평균 매출액(억원) : ('13) 11.7 → ('14) 12.0 → ('15) 13.4 → ('16) 15.8

** 사회적기업 자금조달('15, 고용부): 정부보조금(51.4%), 특수관계인 차입(43.6%)

-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사회적경제의 자금수요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

-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이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, 만기(인내자본 희망), 지원수단(융자·보증에 편중) 등에서 수급간 미스매치도 발생

③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생태계 구축이 미흡하고, 사회적 성과 평가 등 관련 시장 인프라도 미비(→거래·정보비용이 큼)

- 사회적금융을 복지제도로 혼동하거나 기대수익이 낮은 반면 위험은 높다는 인식 등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저조

※ (참고) 사회적금융시장의 발전단계

조회되지 않은 혁신 ▶ 시장 구축 (英·美) ▶ 시장가치의 포착 (英·美的 5~10년후) ▶ 시장 성숙

- 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• 시장 요구와 정책 인센티브에 반응하여 산발적인 기업활동이 발생 | • 활동의 중심이 발전하기 시작 | • 주요 시장참가자가 사회투자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성장이 일어남 | • 활동이 정상상태에 도달, 성장이 둔화 |
| • 언뜻 보면 성숙된 시장에서 각각의 혁신가들이 새로운 사업모델을 추구 | • 거래비용을 낮추고 더많은 활동을 지원하는 시장 인프라가 구축 | • 시장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전 인프라에 투자한 고정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| • 일부에서는 활동의 축소가 일어나기도 함 |
| • 시장의 상단을 제외하면 시장경쟁이 부재 | | • 조직들이 보다 전문화됨 | |

* 출처: Monitor Institute(2009), "Investing for Social & Environmental Impact"

III. 사회적금융 해외 사례

- ◆ 영국·미국·일본 등에서는 정부재정 및 공공재원(휴면예금)을 바탕으로 사회적금융 생태계를 구축(☞참고)
- ◆ 협동조합의 전통이 강한 유럽에서는 민간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체계가 자생적으로 발달

1. 정부재정 · 공공재원(휴면예금) 중심의 지원체계

가. 영국의 Big Society Capital (“BSC”)

- 지속가능한 사회투자시장을 형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‘12년 사회투자도매은행(Social Investment Wholesaler)인 BSC를 설립
- 휴면예금 4억 £와 4대 대형은행의 2억 £출자로 재원(6억 £)을 조성하고, 정부 관여를 최소화*하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
 - * 최대주인 Big Society Trust의 이사회(이사 8인으로 구성, 영국 내각부 이사 1인 포함)는 BSC 규정(보수·인사규정) 개정과 이사 선임권만 행사
- BSC는 민간자금과 매칭투자를 전제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(SIFIs)을 통해 간접지원 → 생태계 구축 및 시장조성 기능 수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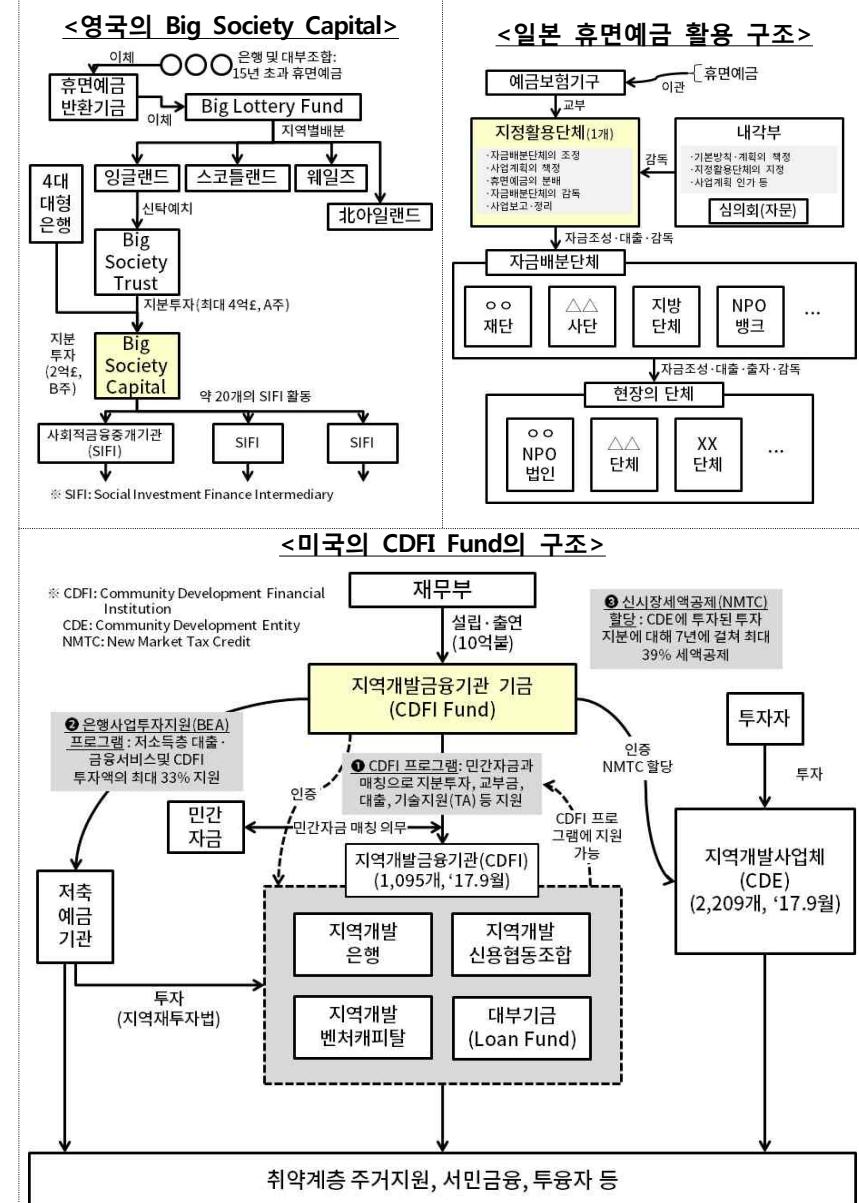
나. 미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 (CDFI Fund)

- 재정으로 기금(CDFI Fund)을 조성, 기금에서 인증받은 지역개발금융기관(CDFI)을 통해 저소득지역 개발*을 간접 지원('95~)
 - * ① CDFI 프로그램: CDFI를 통해 교부금, 대출, 지분투자 등 집행, ② BEA(Bank Enterprise Award): 은행의 CDFI 투자액 일부를 보전, ③ 세제지원(NMTC) 등
- CDFI는 민간자금 매칭 방안 등을 마련하여 CDFI 프로그램에 응모 → 기금은 엄격한 경쟁을 통해 지원대상 CDFI를 선정

다. 일본의 휴면예금을 활용한 공익사업 지원체계

- 일본은 최근 휴면예금을 활용하여 비영리재단을 통해 사회공익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중('16년 법제정 → '19년 지원 착수)

참고 영국 · 일본 · 미국의 사회적금융 지원 체계



2. 민간 기반의 자금지원

가. 협동조합금융 방식

□ 협동조합이 발달한 캐나다·스페인 등에서는 신용협동조합(협동조합은행), 협동조합 연대기금 등의 금융지원체계가 발달

① (加) 데잘댕그룹^{*}은 연대경제금고(Caisse d'économie solidaire, '71)를 설립하여 협동조합, 사회적기업 등에 사회적금융을 제공

* 1900년 신용협동조합인 인민금고에서 출발, 금고간 연합합병, 보험·신탁 등 사업 다각화(40's~) 및 금융그룹화('90s~)를 거쳐 성장한 총자산 2,584억\$의 신협금융그룹

② (西) 몬드리곤 협동조합그룹의 라보랄쿠차(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신협, '59)는 그룹내 조합간 자금 재분배 및 사업 총괄조정 기능을 담당

나. 사회적은행 방식

□ 네덜란드·이탈리아 등에서는 예금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여 사회적기업 등에 투융자하는 사회적은행이 활동

① (蘭) 트리오도스은행(Triodos Bank)는 은행업 인가를 받아('80), 저리로 조달한 예금으로 사회적기업, 환경기업 등에 신용을 제공

* 총자산 91억€, 예수금 80억€, 대출 57억€, 세전이익 0.4억€('16末 기준)

② (伊) 방카에티카(Banca Popolare Ethica, 신협, '99)는 엄격한 윤리성을 갖춘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를 대상으로 신용을 제공

다. 기타

□ 소액 다수의 투자자(기부자)와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 등을 중개하는 크라우드펀딩 방식의 지원체계가 존재*

* 미 KIVA, 영 SSE(Social Stock Exchange) 등이 이에 해당

□ 비영리단체·사회적기업에 경영 지원 및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성장과 사회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벤처자선가^{*}도 활동중

* 전통적인 기부후원 등 비영리금융 수단부터 대출·투자·매짜닌, 구조화 금융까지 다양한 금융수단 제공 → 영국의 Impetus-PEF, 일본의 일본벤처자선기금(JVPF) 등

IV. 사회적금융 활성화 추진방안

1 기본 방향

①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한 촉매제로서 자금의 도매 공급기관인 사회가치기금(가칭, Social Benefit Fund) 설립을 지원

- '자금공급→대출액↑→자금회수→자금공급↑' 등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자금공급과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 역할 수행
- 민간이 중심이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경제의 기본 취지를 감안, 민간주도로 설립·운영되도록 하고 정부는 간접 지원

② 투자자-사회적경제기업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해 금융과 사회문제에 전문성이 있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^{*}을 육성

* 1) 투자자와 사회적경제기업간 사이에서 거래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 중개를 주된 업무로 하는 기관으로, 2) 투자대상 발굴, 3)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수행

- 사회가치기금은 객관·투명한 절차에 따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중개기관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
- 기존 중개기관의 역량강화와 신규 중개기관의 출현을 위해 체계적인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방안 마련·추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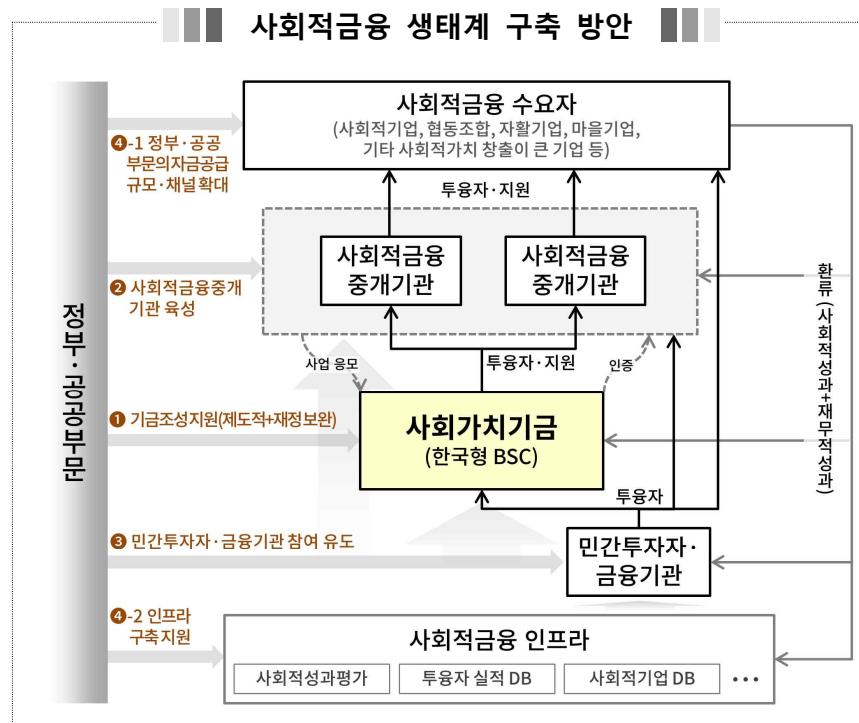
③ 엄격한 선관주의의무 준수가 필요한 민간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과 인센티브 부여 추진

- 사회·재무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금융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평가체계 마련
- 여타 투자기회에 비해 낮은 기대수익률^{*}을 보전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

* 투자는 사회적경제가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자신의 투자수익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사회적금융의 기대수익률이 낮다고 인식

④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,
우선 정부·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

- 정부·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지원채널과 규모를 확충하고 신협·새마을금고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
 - 투자·대출·보증 등 다양한 지원수단을 확보하여 성장단계에 맞게 자금을 지원하되, 추후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
 - 정부·공공부문의 자금공급 과정에서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의 참여를 확대하고 투융자실적 DB 등 인프라 구축 병행 추진
- ⑤ 사회적경제 성장·발달을 위해 인력·판로·보조금 등 여타 지원 방안과 사회적금융 방안의 유기적 연계강화 추진



2 |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

- ◆ 사회적금융시장의 3대 플레이어로서 **•사회가치기금의 조성**, **•사회적 금융중개기관 육성** 및 **•민간투자자·금융기관 참여 확대** 추진

가. 사회가치기금(가칭, Social Benefit Fund, "한국형 BSC") 설립 지원

□ 민간 자율적으로 사회적금융 민간기금* 설립 추진

- *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가치기금의 법적 설립근거 명시
-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·출자 및 기부 등으로 주요 재원 확보
- 기금 운영주체는 출자·대출·출연·보증 등 다양한 사업을 탄력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형태를 채택
- 정부로부터 독립성, 투명성, 책임성,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운영주체의 기금운용 원칙과 소유·지배구조 마련

□ 사회가치기금은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을 통해 자금을 간접 지원하는 등 도매기금(wholesaler)으로서 역할을 수행

-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에 주로 투·융자하되,
- 일정한도내에서 사회적가치 창출이 큰 일반 중소기업, 낙후지역 개발사업 등도 투·융자대상에 포함

□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규모·자금수요, 해외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, 5년간 3천억 규모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조성

- 성급한 규모 확대보다는 공급·회수 등 성공사례 창출에 주력

□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가치기금이 자율적으로 설립·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및 재정 보완을 지원

- 정부·지자체에서 사회가치기금에 출연을 추진^{*}하고 미소금융 재원에서도 출자·출연이 가능하도록 서민금융법 개정^{**} 추진
 - *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정부·지자체의 사회가치기금 출연·출자 근거 마련
 - ** ① 법률의 목적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명시, ② "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"(→민간기금에 출연·출자)을 업무로 규정
- 사회가치기금의 독립성 확보차원에서 정부·지자체에서의 출연·출자는 민간재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허용
- 정부·지자체 등에서 시행중인 사회적 금융 관련 기존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사회가치기금에 이양 추진
- 기금설립·운영에 필요한 제도마련, 민간재원 확보 및 다양한 지원수단 활용 등을 위한 인센티브 강구 등
- 민간의 자율적인 논의와 자금모집 등을 통해 기금설립을 추진해 나가되, 정부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설립 지원
- 민간주도 「사회가치기금(Social Benefit Fund) 추진단」 설립
 - 사회적경제 연합단체 추천자, 사회적경제 금융기관*, 사회적금융 전문가, 투자의사가 있는 기관 대표자, 법률가 등으로 구성
 - * 예) 농협, 수협, 새마을금고, 신협 등
 - 정부(기재부 등)는 추진단 요청시 논의에 참석
 - 추진단은 사회가치기금 설립을 위한 세부사항 검토, 정부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, 자금 모집 등의 활동 전개
- 국제 임팩트투자 민간협의체(GSG*) 가입 지원을 통해 미국·영국 등의 사회적금융 선진사례를 도입·자문하는 창구로 활용
 - *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 : '13. G8 정상회의시 영국 주도로 설립한 임팩트투자 활성화 민간협의체(16개국 가입중), 우리나라에서는 GSG 가입을 위한 민간의 임팩트투자자문위원회가 출범('18.2월)할 예정
- 올해안에 사회가치기금 설립·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
- 2월초 사회가치기금 추진단 출범과 운영을 적극 지원

나. 사회적금융증개기관 인증(Certification)제도 도입

- 사회가치기금은 금융증개기관의 사회적금융 지원경험·실적 등을 감안하여 사회적금융증개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
 - * 인증제도 도입 초기에는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 구축한 증개기관 DB를 활용하고, 이후에는 매년 증개기관 현황을 조사하여 업데이트
- 인증대상은 사회적금융을 주로 수행하는 증개기관뿐 아니라 사회적금융을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반 금융기관^{*}도 포함
 - * 사회적금융에 전문성 또는 의지가 있는 신기술사, 벤처캐피탈(VC), 신협 등
- 인증요건은 법적형태, 소유구조, 사회적금융 경험·전문성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정
- 사회가치기금은 인증받은 사회적금융기관에게 다양한 사회적 금융 관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
- 사회적금융기관은 사회가치기금이 공모하는 사업에 응모하거나, 스스로 사업을 제안하여 민간기금에 대해 자금지원^{*} 요청도 가능
 - * (예시) 사회적금융 관련 투융자를 위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사회가치기금의 보증,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투자 유치시 이에 상응한 기금의 출자지원 등
- 사회가치기금은 증개기관의 역량강화^{*} 사업을 추진하고, 미인증 증개기관 등을 대상으로 인큐베이팅 프로그램도 운영
 - * 증개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 금융교육·컨설팅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의 금융·재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회가치기금이 증개기관을 지원
-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이후, 동법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적금융 기관 및 사회적경제지원 증개기관 지정제도와 운영상 연계 강화
- 다. 민간자금·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
- 민간기반의 사회적금융 사례분석 등 연구용역을 거쳐 사회적경제 기업의 특수성·다양성 등을 고려한 세계지원 등 지원방안 마련
- 은행 등 금융기관의 지역금융 강화를 위해 도입예정인 지역재투자 제도 도입과정에서 사회적금융 관련 실적을 반영하는 방안 검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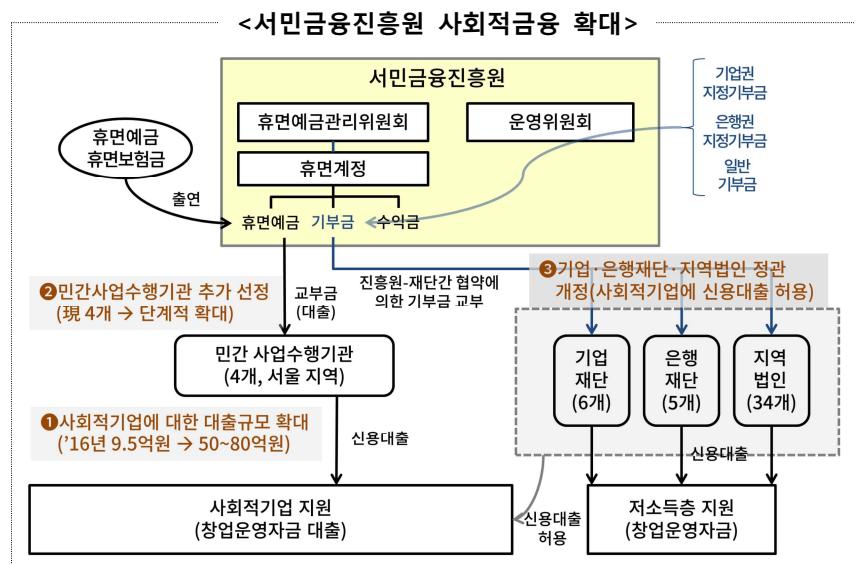
3 사회적금융 공급확대

◆ 사회적금융에 대한 투자경험을 축적하고 성공사례의 발굴· 확산을 위해 정부·공공재원의 공급확대 및 제도개선 추진

가. 대출 확대

①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확대(단계적으로 연 50~80억원까지 확대)

- 휴면예금 재원을 활용한 서민금융진흥원의 (예비)사회적기업 대출한도를 연간 50~80억원 규모까지 확대('16년 9.5억원 지원)
 - 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(現 서울 4개→서울 외 지역포함 단계적 확대)
- 별도 기부금으로 운영중인 진흥원의 기업·은행재단, 지역법인이 사회적기업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정관개정 협의 추진
 - 기업·은행재단, 지역법인이 서민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대출시에도 기존 서민금융과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



② 중소기업·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확대('18년 400억원)

- 사회적경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자금* 지원

*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.35%)·장기로 자금을 대출해주는 사업

-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기업*에 대해 지원 확대('17년 200억원 → '18년 350억원)

*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

- 창업, 성장, 긴급경영안정 및 재도약 등 기업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금 지원

- 시설자금(10년, 45억원 이내), 운전자금(5년, 5억원 이내) 융자지원

○ 사회적경제 관련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

- '18년 소상공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사회적경제조직 전용자금으로 50억원 신규편성(자금수요에 따라 필요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)

-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대출 평가모형을 개발* ('18년 상반기)하고,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('18년 하반기)

* '18년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해 적용

-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수요를 고려하여 자금 구성 및 지원

<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조건(안) >

구 분	시설자금	운전자금
대출한도	2억원	1억원
대출금리	정책자금 기준금리 + 0.6%p(분기별 변동금리)	
대출기간	5년(거치기간 2년 포함)	
대출상환	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	

나. 보증 확대

① 신용보증기금 보증지원 확대 ('17년 66억원 → '18년 400억원)

- 신용보증기금에 사회적경제 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재정 등 지원을 통해 향후 5년내 최대 5,000억원까지 보증 공급 추진
- 별도 지원계정 신설前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 운영('18년중 400억원 신규 보증공급)
- 현재 운영중인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에 대한 보증사업의 기업당 보증한도, 운전자금 한도사정 특례* 등을 확대

* 매출액 등 재무지표가 부족하더라도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

구분	현행	개선
기업당 보증한도	1억원	3억원
한도사정 사회적기업	5천만원	1억원
특례 협동조합	3천만원	5천만원

- 마을기업·자활기업에 대한 보증 신상품*을 도입·운영

* (보증한도) 1억원, (한도사정특례) 3천만원 이하

- 취약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재무상황을 고려하여 우대된 심사 기준*을 적용하는 등 맞춤형 평가체계를 운영

* 매출액 대비 차입금 비중 항목, 신용등급현금흐름 등 신용도취약 항목 적용 배제 등

②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 확대 ('17년 97억원 → '18년 150억원)

- 현행 사회적기업·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마을기업·자활기업까지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
- 보증한도는 조합·기업당 최대 4억원 이내로, 보증비율은 100% 전액보증으로 운영하고 보증요율은 연 0.5%로 우대
-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각 지역신보의 특례보증 실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·평가함*으로써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관리

* 평가결과는 중앙회의 재보증료 차등화 등에 반영

다. 투자 확대

① 성장사다리펀드 内 '사회투자펀드' 조성 ('18년 300억원)

- 성장사다리펀드 출자 및 민간·공공자금 매칭을 통해 우선 300억원 규모로 1차 조성('18년 상반기)
 - * '17.11.28 사회투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 → '사회적기업 투자 분야' 펀드는 위탁운용사 선정 완료('17.12.20), '임팩트 투자 분야'는 위탁운용사 접수종
- 투자 집행 상황을 보아가며 향후 5년간 최대 1,000억원까지 단계적 확충 추진
- 펀드 결성금액의 일정비율(60~70%)을 인증 사회적기업, 예비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을 지닌 기업에 투자
- 인증을 받거나 외부 민간전문기관의 '사회적성과 평가'를 거쳐 사회적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인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선정
- 일반 펀드 대비, 기준수익률은 낮추고 성과수익률은 높여* 운용사의 적극적인 투자 및 사회적가치 제고 활동 유도
 - * 운용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차등 적용
(예 : 성장사다리펀드 2% 내외, 민간 4% 내외)
- 사회적기업의 성숙도·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투자 방식과 대출 방식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
- 성장사다리 또는 희망출자자 출자금의 일정 비율(예: 50%, 30%) 이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여 민간출자자 부담을 경감
- 인내자본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(10년 내외)로 설정

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^{*} 추가 조성(18년 75억+α)

- * '11년부터 '15년까지 4차례 걸쳐 사회적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 182억원 조성
- '18년 예산 75억원과 민간출자금(α)^{*}으로 펀드를 조성·운용하고, '19년 이후에는 예산에 추가 반영을 검토
 - * 민간출자금은 총 출자금(예산 75억+α)의 30% 이상 모집
- 사회적기업·예비사회적기업뿐 아니라 마을기업·자활기업 등으로 투자대상을 확대
- 출자금 총액의 60% 이상을 투자대상에 투자하고, 나머지도 가급적 사회적 기여가 가능한 일반 중소기업 등에 투자
 - 펀드 재원별로 기준수익률을 차등화하여 민간출자 활성화 및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
 - (기준수익률 : 모태펀드 출자 0%, 민간 7%)

③ 소셜벤처^{*}에 투자하는 임팩트펀드 조성·운용(18년 1,000억 원)

- * 재무적 성과와 사회문제 해결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혁신성·성장성을 보유한 기업
- 총 1,000억 원 내외로 펀드를 조성하고, 벤처캐피탈(VC) 등이 펀드를 운용
 - 모태펀드에서 펀드에 80%를 출자(800억원 내외)하고, VC 등 운용사가 나머지 20%를 민간 투자자로부터 모집
- 운용사 선정 시, 운용사가 투자기업의 사회적 성과(공공성)를 측정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제시도록 할 예정
- 성과창출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투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펀드 존속기한을 장기로 설정
- 모태펀드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고 및 민간투자자에 대해 콜옵션을 부여^{*}하여 민간의 투자 참여확대를 유도

* 이익발생시 민간투자자에게 모태펀드지분 매입권(콜옵션)을 부여

※ (참고) 사회투자펀드·사회적기업 모태펀드·임팩트 펀드 비교

구 분	사회투자펀드	사회적기업 모태펀드	임팩트투자 펀드
주 재 원	성장사다리	모태펀드(고용부)	모태펀드(중기부)
투자대상	사회적경제기업 등	사회적경제기업 등	소셜벤처
조성규모	'18년 300억원(5년내 최대 1,000억원 확대 검토)	'18년 75+α억원(모태 75억원, 민간 α)	총 1,000억원(모태 800억원, 민간 200억원)
존속기간	10년 내외	8년	10년 내외
특 징	투자 및 대출 혼용	지분, 전환사채 등 투자	지분 투자

④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

- 사회적기업이 '업력제한^{*}' 없이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(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)
 - * 현행 크라우드펀딩은 업력 7년 이내의 중소기업(벤처기업 등 예외)만 참여 가능
 - 상당수 사회적기업이 인증기간 소요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
- 유망 사회적기업의 주식형 크라우드펀딩시 초기단계에서 투자 하는 '마중물 펀드'를 마련·지원(성장사다리펀드, '18년중 50억원 규모)
 - 아울러, 중개업자의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에 사회적기업 전용 별도 페이지('사회적기업 전용판') 마련을 유도
- 예탁결제원-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간 협력을 통해 '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'를 개최^{*}하여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도모
 - * 예탁결제원 나눔재단을 통해 중개업자의 실사비용 및 중개수수료 50% 지원을 추진(→연간 50개 내외의 사회적기업 지원 예상)
- '사회투자펀드'의 투자대상에 사회적기업 크라우드펀딩 중개 실적이 우수한 중개업자를 포함 (⇒중개업자 기업발굴 노력 유도)

라. 협동·지역금융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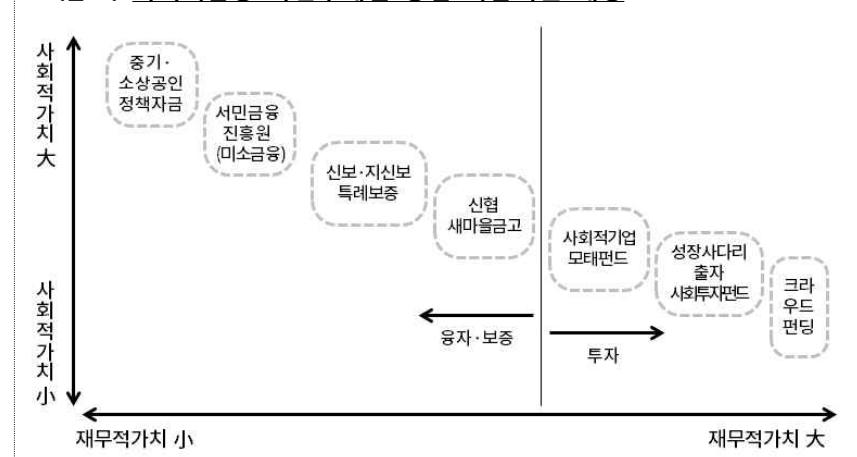
① 신협의 사회적금융 역할 강화

- 신협중앙회에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을 위한 전용기금을 설치 (年 100억원 규모)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
- 전용상품 및 별도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신협을 통해 지원하되, 거액의 경우에는 중앙회가 직접 심사·지원하는 방안도 고려
- 신협의 사회적기업 등 他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*, 사회적경제 기업의 신협 법인조합원 가입유도 등 상호유대 강화
- * 신협이 他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협법 개정을 추진

② 새마을금고의 지역·사회적금융 역할 강화

- 지자체-새마을금고-중앙회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고, 지신보와 연계하여 보증부대출 등을 지원*하는 시범사업 실시
- * 단, 지역내에서 보증부대출을 취급하는 금고의 범위를 제한하고, 해당 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심사역량을 내재화하도록 유도
- 새마을금고가 사회적경제기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내규 개정

※ (참고) 사회적금융 사업주체별 중점 자금지원 대상



4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

- ◆ 정부·공공부문의 사회적금융 공급확대과정에서 심사·평가 및 전달체계 등 인프라 구축을 병행·추진

가.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

- ① 사회적금융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'사회적금융협의회' 설치·운영
 - '사회적금융협의회'에는 관계부처, 담당기관* 및 사회적경제 조직이 참여하여 상호 연계·협력을 강화
 - * 서민금융진흥원, 성장사다리펀드, 모태펀드, 신보·지신보, 신협, 새마을금고 등
 -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지원 연계 강화*, 지원정보 공유, 인프라 공동조성, 사후관리방안 등을 협의
 - * 사회적경제기업의 인큐베이팅·창업단계에서 성장·재기단계까지 유기적 연계
- 정부보조금사업·인력·판로지원사업 등과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기타 사업담당기관간 협력도 강화

②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대출·보증·투자 등 정보공유 확대

- 지원내용·실적과 재무·사업 등 기업정보를 사회적금융 담당 기관간 공유하여 중복지원 방지와 심사·평가방법 개선에 활용
-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은 주기적으로 세부 금융지원 실적을 외부에 공개함으로써 금융지원의 투명성 제고
-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여 기업정보투자마당내(IBK) 전용 폐이지를 개설하고, 유망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보를 게재

③ 기업마당*내 사회적금융 지원메뉴를 개설하여 사회적금융 담당 기관이 제공하는 금융지원 상품·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·공시

- * 중앙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중소기업 지원정보를 한 곳에 모아 알기 쉽게 제공하는 정책포털사이트(www.bizinfo.go.kr)

나.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

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

- 서민금융진흥원의 민간 사업수행기관을 **사업역량 및 지역적 배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선정**(현재는 서울지역에만 4개)
 - 서민금융진흥원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(가칭)'사회적기업 지원위원회'를 설치하여 사업수행기관 선정의 공정성·투명성 제고
 - 동 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수행기관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우수기관에 대해 **운영비 지원, 교부금 확대** 등 인센티브를 제공
- 사회투자펀드 등 사회적금융 관련 투자자금 운용시도 일반 운용사 외에 사회적금융에 전문성을 갖춘 중개기관의 참여 확대
- 신보·지신보 보증 및 기타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도 사회적 금융중개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

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간 연계 강화

- 중개기관의 법적형태 및 지원실적 등에 대한 **실태조사 및 주기적인 현황 조사***를 통해 중개기관 DB를 구축·운용

* 대출 중심 중개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투자 중심 중개기관은 성장사다리펀드에서 담당

- 중개기관 DB는 **사회적금융협의회** 공동의 자산으로 구축하여 **위탁 기관 및 지원 대상 선정** 등에 활용
- 사회가치기금 설치 이후에는 **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**의 기초 자료로 활용
- 중개기관이 **사회적금융협의회**에 참여함으로써 업계의견 전달 및 네트워크·파트너쉽 형성을 촉진

다.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

①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 마련 → 금융지원에 활용

- 우선,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**사회적 목적 실현, 사회적 기여도 등을 반영한 맞춤형 심사·평가체계*** 구축·운영
 - * 고용부의 '사회적가치지표' 등을 참고하여 고용안정, 지역사회 기여, 사회적 환원 등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재무적 특성과의 적정 가중치를 설정
- 추후, 사회적금융 담당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**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'표준 사회적성과 평가체계'** 마련
 - 고용부 등 현재 사회적 평가를 담당하는 기관과 공동 작업으로 추진하고,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평가체계의 수용성을 제고
 - 성과 측정시 자의성을 배제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 가능한 성과(outcome) 위주의 평가체계를 마련
 -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면서 측정대상간 비교가 가능하도록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각각 객관적 측정방법을 마련
- 개별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도를 등급으로 평가·표시 할 수 있는 **사회적가치 등급제**로 발전시키는 방안 검토

② 정부·공공재원의 사회적금융 선별기능 보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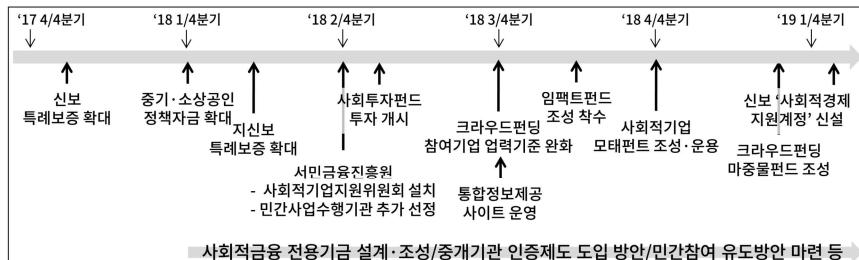
- 정부·공공재원으로 지원시 민간자금과의 **매칭지원**을 확대함으로써 **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선별기능 보완**을 추진
- **신보과 지역신보의 보증**에 있어서도 **부분보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민간 금융기관의 선별기능 활용**

※ 이러한 시장의 선별 기능의 활용은 민간의 사회적금융 투융자 경험을 확대시키는 효과도 존재

③ 사회적금융 담당기관별로 사회적금융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성과보고서로 작성하여 외부 공개

V. 향후 추진 일정

□ '18년 중 사회적경제기업에 총 1천억원 이상의 금융지원(대출 450억원, 보증 550억원 등)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



□ 개별 정책과제는 다음 일정에 따라 추진하고, 주기적으로 사회적 금융협의회를 통해 이행 현황 및 성과를 관리

<과제별 추진 일정>

정책과제	조치사항	일정 · 부처
1. 사회적금융시장 조성 지원		
① 사회적금융 전용기금 조성	'18년중	기재부
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인증제도 도입	'18년중	기재부
③ 민간자금·금융기관의 사회적금융 참여 유도	'18년중	기재부
2.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		
가. 대출 확대		
① 미소금융 지원 확대	'18.2분기 '18.2분기	금융위 금융위
② 중기·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	'18.1월 '18.1월	중기부 중기부
나. 보증 확대		
① 신보 보증지원 확대	'19년 '17.10월	금융위 금융위
② 지신보 보증지원 확대	'18.2월	중기부

다. 투자 확대
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-|
| ① 사회투자펀드 조성 | ▶ 사회투자펀드 조성·운용 |
| ②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| ▶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조성·운용 |
| ③ 임팩트펀드 조성 | ▶ 임팩트펀드 조성·운용 |
| ④ 크라우드펀딩 활용도 제고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참여기업 업력기준 완화 ▶ 모태펀드 조성·운용 ▶ 마중물 펀드 조성·운용 ▶ 사회적기업 발굴 프로젝트 |

'18.2분기	금융위
'18.4분기	고용부
'18.하반기	중기부
'18.6월	금융위
'18.12월	금융위
'18.상반기	금융위

다. 협동·지역금융 역할 강화

- | | |
|---------------|---|
| ① 신협의 역할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기금 설치 ▶ 신협의 타법인 출자 허용 ▶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상품 마련 |
| ② 새마을금고 역할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새마을금고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▶ 지자체 시범사례 발굴 ▶ 새마을금고의 사회적경제기업 출자 허용 |

'18년중	금융위
'18년중	금융위
'18.6월	금융위
'18년중	행안부
'18년중	행안부
'18년중	행안부

3. 사회적금융 인프라 확충

가.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 협력 강화

- | | |
|-----------------|--|
| ①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회적금융협의회 설치·운용 ▶ 세부 금융지원 실적 공개 |
| ② 유관기관간 정보공유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기관간 지원실적 등 공유 확대 ▶ 기업당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보 거제 |

'18년중	금융위
'18.하반기	관계부처
'18.하반기	관계부처
'18.6월	중기부

나.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육성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①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통한 자금지원 확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민간사업수행기관 추가 선정 ▶ 기타 중개기관 활용 확대 검토 |
| ② 사회적금융중개기관과 유관기관간 연계 강화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▶ 사회적금융중개기관 협의회 참여 |

'18.2분기	금융위
'18년중	금융위/중기부
'18.하반기	협의회
'18.하반기	협의회

다.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마련 등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① 사회적성과 평가체계 마련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담당기관별 맞춤형 평가체계 운영 ▶ 표준 평가체계 마련 |
| ② 정부·공공재원의 선별기능 보완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신보·지신보 선별기능 보완방안 검토 |
| ③ 성과보고서 작성·공개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담당기관별 성과보고서 작성·공개 |

'18년중	관계부처
'19년	협의회
'19년	금융위/중기부
'19년	관계부처